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의견조회

1. 건전한 지방공기업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협조해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민주당, 정무위)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코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17. 7. 20.(목)까지 행정자치부(공기업정책과)로

* 문서 수신부서가 소관 부서가 아닌 경우**관련 업무 소관 부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8조제9항 신설)
-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8조제10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⑧ (생략)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개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의견 제출 서식 >

기관명	검토의견	사유

※ 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 제시 가능

붙임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공기업담당관), 부산광역시(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인천광역시(재정관리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정책관), 대전광역시(창조혁신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혁신담당관), 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성과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재정점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정책과-962 (2017.07.11.) 접수 공기업담당관-8608 (2017.7.11.)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4호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570 / 전송 02-2100-3567 / yuseon@moi.go.kr / 비공개(5)